

유급휴가훈련지원

● 사업목적

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**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**

● 지원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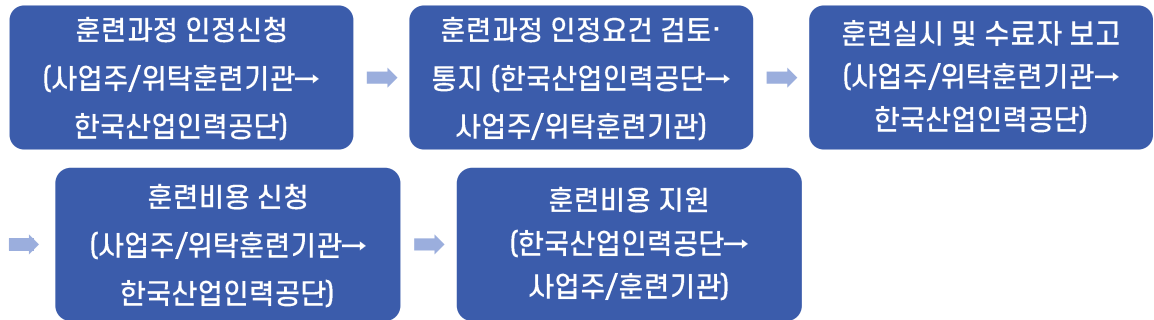
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

●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

-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
 -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**훈련비 및 훈련참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**
 -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**훈련비 및 훈련참여 근로자의 임금 외에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의 일부도 지원**
- 그 외 기업
 -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**훈련비 및 훈련참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**

훈련비용		집체 훈련에 대한 지원수준과 동일	
임금	훈련참여자 임금	우선지원 대상기업 등	소정훈련시간 X 시간당 최저임금액 150%
		그 외 기업	소정훈련시간 X 시간당 최저임금액 100%
	대체인력 임금	우선지원 대상기업 등	소정훈련시간 X 시간당 최저임금액 100%

● 사업추진체계



● 지원문의

- 한국산업인력공단 : 1644-8000
-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: www.hrdkorea.or.kr